

# 안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## 일부 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 2199

제출년월일 : 2011.10.21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-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('01. 5.24 공포, '01.10.1 시행)에 따른 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#### 가. 조례 제명 변경

- “안산시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”를 “안산시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”로 변경

#### 나. 『의료급여법』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6조, 안 제7조)

- “의료보호”를 “의료급여”로, “보호대상자”를 “수급권자”로 명칭 변경

#### 다.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의 2)

####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# □ 개정조례안 : 불임

#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

- 『의료급여법』 제3조, 제6조, 제24조

#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#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### 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11. 9. 23. ~ 2011. 10. 13. (20일간)

#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현행조례

# **안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**

## **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안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회계는 의료보호기금”을 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의료급여기금”으로 하고, “의료보호대상자”를 “의료급여수급권자”로 하며, “의료보호비”를 “의료급여비”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중 “회계공무원”을 “기금관리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제16조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”를 “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”로 하고, “의료보호비”를 “의료급여비”로 하며, “의료보호대상자카드”를 “의료급여대상자카드”로 하고, “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5조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의료보호비용”을 “의료급여비용”으로 하고, “경과한”을 “경과된 날이 속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규정에”를 “규정에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“의료보호를 정지”를 “의료급여를 중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3항에 따른”으로,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의2(결손처분) 시장은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.

1.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
2.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
3.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사회복지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사회복지과장 김창모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초생활계장 전복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문선미 (행정 2872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안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료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(이하 "보호대상자"라 한다)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세입과 세출)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.</p> <p>제3조(회계공무원의 임명)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,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</p> <p>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</p> <p>제6조(지출) ①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.</p>	<p>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</p> <p>제1조(목적)-----「의료급여법」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-----</p> <p>----- .</p> <p>제2조(세입과 세출) --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는 의료급여기금 및 ----- 의료급여수급권자-----의료급여비-----</p> <p>----- .</p> <p>제3조(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)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-----</p> <p>----- .</p> <p>② ----- 제1항에 따른-----</p> <p>----- .</p> <p>----- .</p> <p>----- .</p> <p>제6조(지출) ① -----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-----의료급여비를 -----</p> <p>----- .</p> <p>----- 의료급여대상자카드-----</p> <p>----- 제5조제2항에 따른-----</p> <p>----- .</p> <p>----- .</p> <p>----- 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-----</p> <p>----- .</p> <p>----- 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대불금의 상환등)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. 이 경우 대불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.</p> <p>③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.</p> <p>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"지방세체납처분"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의2(결손처분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.</p> <p>1.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</p> <p>2.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</p> <p>3.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(동장의 확인과 안산시의료보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.)</p>	<p>제7조(대불금의 상환등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의</p> <p>료급여비용-----경과된날이 속한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규정에도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③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따른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의료급여를 중지-----.</p> <p>④제3항에 따른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따라-----.</p> <p>제7조의2(결손처분) 시장은 「의료급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.</p> <p>1.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</p> <p>2.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</p> <p>3.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</p>